

호주산 육우 현지검역을 마치고

李 弘 吉

동물검역소 수의관

I. 머리말

1981년 후반기에 정부는 육류공급의 원활을 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긴급 육우도입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하게 되었다.

원래의 우리나라 정부의 동물검역 요구조건에 의하면 육우 수출국은 수출 선적전 30~60일 사이에 원산지 농장에서 우결핵과 존씨병의 검사를 마치고 이 전염병에 걸린 증거가 없는 건강한 소만을 따로 모아 다시 규정된 여러가지 검사를 거쳐 선적전 최종 7일간 완전 격리 수용을 한 후 우리나라로 수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연말까지의 촉박한 시일내에 예정두수를 긴급히 도입하게 되어 수출국 현지에서 선적전 30~60일 사이에 농장

검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수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에는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돈콜레라, 우폐역, 우역 등과 같은 악성 전염병이 발생치 않고 있으며 국내의 가축 전염병조사연구, 가축시장 관리, 도축장 관리, 방역 등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이나 축산물의 수입시는 국가 소유 또는 국가가 지정한 검역시설에서 격리 및 검사를 엄격히 행하는 반면 동물이나 축산물의 수출에 대해서는 국가소유의 검역 계류장이나 시설이 따로 없고 대개 수출업자가 적당한 농장이나 시설을 임시로 빌려 국가의 지정을 받은 후 검역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



는 인근 타 농장의 가축과 엄격한 격리수용이 잘 안되고 있어 이상적인 검역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체로 어떠한 나라이든지 동물검역기관의 첫째가는 임무는 외국으로부터 자국내에 가축전염병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자국의 전염병이 타국으로 퍼져 나가는 것은 둘째 문제로 치고 있으며 국제적 신용을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그 나라와 수입 당사국간의 합의된 가축위생 조건의 범위내에서만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과학적 지식의 범위내에서 전염병 전파의 가능성은 항시 존재하고 있으며 전염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국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방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수입국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현지 검역의 의의는 현지농장 검역기간의 단축에 따른 전염병의 국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상대국 검역관과 협조하여 전염병 검사 및 격리를 행하는데 있었으며 종전에 검역관이나 우리나라 정부 수의사가 검수를 위해 수출국 현지에 파견된 일은 있었으나 현지검역의 임무를 정식으로 부여하여 정부가 동물검역관을 해외에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번 파견 검역관에게 부여된 주 임무는 우리 정부가 제시하여 당사국과 합의를 본 가축 위생조건이 현지에서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에 부수적으로 상대국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수출도축장, 양모가공장, 우지가공장 기타 축산물 처리장등의 가축위생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2. 현지검역 개요

1981. 9. 17(목) 새벽 1시 호주 멜본공항에 도착, 멜본시내의 런던호텔에 여장을 풀다. 그 다음날인 9월 18일 오전은 멜본시에서 매년마다 열리는 가축품평회에 참관하여 호주의 대표적인 종축들을 둘러 볼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의 동물 선발이나 질병검사를 위한 예비지식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날 오후에는 빅토리아 주정부 농업성 건물에서 주정부 수의 위생담당관인 R. Turner와 주임 검역관인 J. Ballek

등과 우리측 동물검역관, 축협외의 검수관 그리고 공급회사인 데니스·스트론·머캔타일사와 인터내셔널 랜치 매니지먼트·서비스사에 공급자 대표와 수의사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가졌다. 주 토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가축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었다. 먼저 우리측이 이번의 현지검역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호주 정부당국의 협조를 부탁했으며 그후 호주측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었다. 1) 소비브리오증과 트리코모나스증 검사에 있어 우리측 조건상에 “임상검사 및 상대국 정부가 인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사해 달라”고 하는데 그 “상대국 정부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무엇인지? 하는 것이었다. 원래 소의 비브리오증이나 트리코모나스증 검사는 암소의 경우 자궁경관의 점액을 채취하여 배양 또는 현미경 검사를 하거나 숫소 종모우의 경우 생식기의 포피 세척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방법이지만 이것은 소수의 종빈우나 종모우이면 가검물채취 및 검사가 가능하나 이번과 같이 700여두의 임신성빈우 및 거세우(이것은 상기 두가지 질병의 검사의의가 없음)의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소 비브리오증이나 트리코모나스 증세가 없으며 원산지 농장에 이 두가지 질병이 발생, 보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자기들의 방법이라고 했다. 2) 호주측의 소 부루셀라병 근절계획의 실시 개요에 관한 설명이었다. 호주는 그간 부루셀라병 근절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1982년 1월 1일부터는 잠정적으로 소 부루셀라병 비 발생국의 발표를 할 단계에 들어섰으며 1981년 6월 1일부터는 부루셀라 백신접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고 한다. 1981년 6월 1일 이전에는 모든 암소 독우에 대해서 관인에 방점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니 과거에 이런 점종우를 수입하여 백신접종에 의해 나타나는 혈청반응과 자연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혈청반응의 구분이 잘 안되는 검사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생각난다. 앞으로는 1981년 6월 1일 후 출생한 소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대폭 해소되리라고 생각된다.

3. 원산지농장검역 및 검역시행장내의 검역 실시

1981년 9월 21일(월) 현지검역에 착수, 멜본 시내에서 서남쪽으로 약 100km쯤 떨어진 「젤라」라고 불리는 검역시행장에 이미 모아 둔 헤어포드 거세우의 검역에 착수하다.

우선 축협 검수관들이 규격(주로 체중), 체형 핑크아이, 유두종증 등 제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선발 기준에 의하여 소를 선별해 놓은 것을 공급회사가 임시 고용한 개업수의사와 우리축 검역관이 합동으로 소 투벨크린 및 조닝 접종을 하고 실험실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했다. 그리고 72시간 경과후 투벨크린 및 조닝반응 판정시는 개업수의사와 우리축 검역관이 모든 소의 미근부 주사부위를 이종으로 체크했다. 한편 실험실로 보내진 혈액샘플을 따라 우리축 검역관이 빅토리아주 가축위생연구소로 가서 부루셀라병, 부루팅병에 대한 혈청검사의 현장을 입회했다. 그 결과 공급상사가 제공한 소의 약27%가 불합격으로 탈락했다. 물론 이 숫자에는 당초의 검수시 불합격된 소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전체의 3분의 2가 불합격되고 3분의 1 정도만 골라 가져온 셈이 된다. 따라서 후속되는 비행기의 수송예정두수를 채우기 위해 공급자측은 밤낮을 가리지않고 가축을 사러 다니고 현지 검수관이나 검역관역시 이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대로 쉬어 보지 못하고 지냈다. 이것은 거세우의 경우였고 임신 성빈우의 경우는 검역관이나 검수관이 모든 원산지 농장을 방문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 고충은 배가되었고 아침 5시에 출발하여 밤 10시경에 들어오는 길고도 고달픈 날들을 보냈다. 이렇게 약 35일을 정신 없이 보낸 후 수입예정 두수인 705두에서 57두가 모자라는 648두의 검수, 검역을 끝마치게 되었다. 검사 및 불합격 내역은 아래표 1,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검사결과 요약

검사두수	합격두수	불합격두수	비 고
896두	648두 (72%)	248두 (27.7%)	불합격사유 검수 : 82두 검역 : 166두

〈표 2〉 불합격내역

불합격사유	두	비율 (%)
검역불합격(원인별)	166두	67
IBR혈청반응우	8두	3.2%
BVD "	23	9.3
Bluetongue(항보체 및 비특이 반응)	128	51.7
부루셀라병 반응우	3	1.2
우결핵반응우	4	1.6
검수불합격 *	82두	33
체중미달	24두	9.7%
체중초과	18	7.3
핑크아이 기타	40	16

*예비검수시 불합격된 두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검역중에 부딪친 문제들

검역이나 검수나 간에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믿지 말고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에 대한 경험이 많다해서 눈대중에 의존하여 체중을 어렵다든지 소 눈에 눈물이 흐르고 경한 핑크아이 기운이 있을 때 이것쯤이야 어떻겠나? 하고 통과시켜 버린다가 하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모든 소는 반드시 저울로 달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소는 세세히 관찰하여 신중히 판단할 일이며, 공급자가 아무리 화를 내고 억지를 부려도 자기의 의견을 굽혀서는 안 된다. 언어상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최대한의 노력과 인내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며 이 설득은 반드시 합리성을 띄워야 한다. 이번 현지검역중 우리가 부딪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소도입 일정이 너무나 여유없이 촉박하게 짜여 있었다는 것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잡다한 문제들-비행기 수송일정, 실험실 검사 불합격시 반복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규격에 맞는 충분한 수의 소가 없어서 산재한 광대한 목장을 끝없이 헤맨 것 등등이었다.

「동물검역소식」 Vol No. 5